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채용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37
[별지 제1-1호 서식]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채용계획서	40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채용장려금) 사업 참여 (□승인 □일부승인 □불승인) 통지서	41
 [별지 제3호 서식] 「산업·일자리전환 채용장려금」 사업 변경 신청서	42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채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43
 [별지 제5호 서식]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채용장려금)」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46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채용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피보험자 수		
소재지 주소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2. 채용 계획

(유형1) 위기지역 소재 탄소중립 전환기업	■ 위기지역 유형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 지원 업종	☐ 탄소중립 전환 지원대상 업종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 참여신청 인원	☐ 신규채용 명 ☐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성	명	채	용 일
※ 참여신청 전 채용한 근로자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〇〇지방고용노동청(〇〇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별지) 탄소중립 전환 채용계획서 1부				
	3. (필요시) 중견기업 확인서 등 기업규모 관련 서류 1부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사업주 확인서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이후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사업주가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 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계획서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기한 내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6개월 이후 1회차 신청할 수 있고,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2회차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원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작성방법

□ 사업장 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가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
- 사업장 규모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신청내용 항목

- 지원유형 구분
 - (유형1) 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단,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는 소재지·규모 요건 미적용)
 - (유형2) 폐쇄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2026.12.31.폐쇄 예정인 경우 2025.1.1.부터)인 석탄화력발전소 또는 그 협력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이직할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단, 화력발전업(35113) 제외)
- 탄소중립 전환 지원대상 업종

분류	상세 업종코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동차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110[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41[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13[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421[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73[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화력발전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인증자료 필요)	
철강	241[1차 철강 제조업]	242[비철금속 제조업]
석유화학	20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2[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정유	192[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최대 지원인원
 - 최대 지원인원은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소수점 버림)이고, 최대 10명까지 지원
 - 단, 전체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번호(대표 본인) :

1.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의 지원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원활한 사업운동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참여·운동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자(대표 본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고용센터 소장 귀하

■ [별지 제1-1호 서식]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채용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설립일		피보험자 수	
업종		주요생산품	

2. 사업장 소개·개요

3. 탄소중립 전환 추진배경(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

4. 탄소중립 전환계획 및 대응방향

5.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및 채용계획

6. 기타

■ [별지 제2호 서식]

[]승인
[]일부승인 통지서
[]불승인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채용장려금) 사업 참여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피보험자 수	
소재지 주소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2. 승인내용			
(유형1) 위기지역 소재 탄소중립 전환기업	■ 위기지역 유형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 지원 업종	[] 탄소중립 전환 지원대상 업종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 참여신청 인원	[] 신규채용 명 []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 승인 기간	(시작일) . . .	(종료일) . . .	
☐ 승인 인원	(채용장려금) 명		
☐ 승인 금액	총 액 원		
3. 불승인(일부승인) 사유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일부승인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사업 참여 관련 유의사항 붙임 참조

■ [별지 제3호 서식]

「산업·일자리전환 채용장려금」 사업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채용장려금 사업신청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이메일)			핸드폰번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산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2. 채용 계획

(유형1) 위기지역 소재 탄소중립 전환기업	■ 위기지역 유형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 지원 업종	☐ 탄소중립 전환 지원대상 업종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 참여신청 인원	☐ 신규채용	명 ☐ 정년퇴직자 재고용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성	명	채	용	일
※ 참여신청 전 채용한 근로자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승인 기간	(시작일)	.	.	.	(종료일)	.	.	.
--------------------------------	-------	---	---	---	-------	---	---	---

☐ 승인 인원	(채용장려금)	명
--------------------------------	---------	---

☐ 승인 금액	총 액	원
--------------------------------	-----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계획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전직지원 계획서 2. 근로자대표 선임서 3.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4.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5.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4호 서식]

(3쪽 중 1쪽)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채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피보험자 수
소재지 주소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2. 신청 내용			
(유형1) 위기지역 소재 탄소중립 전환기업	☐ 위기지역 유형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 탄소중립 전환	☐ 탄소중립 전환 지원대상 업종 ☐ 산업·일자리전환 건설팅 참여기업	
	☐ 채용 인원	☐ 신규채용 명 ☐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	
(유형2) 폐쇄 예정 석탄화력 발전소 이직 근로자 채용	☐ 채용 인원	☐ 신규채용 명	
총 지원금 신청액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채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1부			
접수번호	3. 급여대장, 이체내역서 등 임금지급 서류 1부			
	4.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채용장려금) 대상근로자 명단 1부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업주 확인서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이후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사업주가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 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사업계획서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기한 내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6개월 이후 1회차 신청할 수 있고,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2회차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원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작성방법

□ 사업장 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가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
- 사업장 규모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신청내용 항목

- 지원유형 구분
 - (유형1) 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단,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는 소재지·규모 요건 미적용)
 - (유형2) 폐쇄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2026.12.31.폐쇄 예정인 경우 2025.1.1.부터)인 석탄화력발전소 또는 그 협력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단, 화력발전업(35113) 제외)
- 탄소중립 전환 지원대상 업종

분류	상세 업종코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동차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110[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41[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13[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421[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73[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화력발전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임증자료 필요)	
철강	241[1차 철강 제조업]	242[비철금속 제조업]
석유화학	20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2[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정유	192[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최대 지원인원
 - 최대 지원인원은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소수점 버림)이고, 최대 10명까지 지원
 - 단, 전체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3쪽 중 3쪽)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	---------	--

☐ (유형1)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채용장려금) 대상근로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신청회차	신규채용/ 정년퇴직자 재고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유형2)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채용장려금) 대상근로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신청회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예정일)	협력사명 (이직일)
1						
2						
3						
4						
5						
6						
7						
8						
9						
10						

■ [별지 제5호 서식]

[]지급
[]일부지급 결정 통지서
[]부지급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채용장려금)」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피보험자 수		
소재지 주소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2. 신청 내용				
(유형1) 위기지역 소재 탄소중립 전환기업	☐ 위기지역 유형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 탄소중립 전환	[] 탄소중립 전환 지원대상 업종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 채용 인원	[] 신규채용 명	[]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	
(유형2) 폐쇄 예정 석탄화력 발전소 이직 근로자 채용	☐ 채용 인원	[] 신규채용 명		
총 지원금 신청액		원		
3. 지급 결정 내용				
☐ 지급 대상 인원	[] 신규채용 명		[]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	
☐ 지급 결정 금액	원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을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식 및 관련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훈련지원금)」

(☐사업 참여 ☐계획 변경) 신청서 87

【별지 제1-1호 서식】 산업·일자리전환 직무 훈련·전직지원 참여 근로자 명단 89

【별지 제1-2호 서식】 산업·일자리전환 직무훈련·전직지원 계획서 90

【별지 제1-3호 서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동의서 91

【별지 제1-4호 서식】 근로자대표 선임서 92

【별지 제1-5호 서식】 노사협약서 93

【별지 제2호 서식】「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훈련지원금)」(☐참여 신청 ☐변경 신청)

검토보고서 94

【별지 제3호 서식】「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훈련지원금)」 참여 신청서 심사표

(심사위원회용) 98

【별지 제4호 서식】「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훈련지원금)」사업 참여

(☐승인 ☐일부승인 ☐불승인 ☐변경승인) 통지서 101

【별지 제5호 서식】「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훈련지원금)」지급 신청서 103

【별지 제5-1호 서식】 산업·일자리전환 직무훈련·전직지원 참여 근로자 명단 104

【별지 제6호 서식】「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훈련지원금)」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105

「공공재정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106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훈련지원금)」

[] 사업 참여
[] 계획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피보험자 수
소재지 주소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2. 훈련·전직지원 계획			
☐ 산업·일자리전환 유형	[] 탄소중립 전환		[] 디지털 전환
☐ 지원대상 유형	[] 지원대상 업종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 3년내 사업재편 승인기업(산업부)		[] 3년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중기부)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신청 내용	[] 직무훈련		[] 전직지원서비스
☐ 신청 기간	(시작일) . . .		(종료일) . . .
☐ 직무훈련·전직지원 방법	[] 위탁	명	[] 자체
☐ 신청 인원	[] 훈련비	명	[] 사업주 훈련장려금
☐ 신청 금액	[] 훈련비	원	[] 사업주 훈련장려금
	총 액		원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계획 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산업·일자리전환 훈련 참여 근로자 명단 2. 직무훈련·전직지원 계획서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동의서 4. 노사협의회 인증서류 5.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 .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소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사업주 확인서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하며, 변경 승인없이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사업주가 계획 변경신청서에 고용 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훈련 등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원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작성방법

□ 사업장 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가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
- **사업장 규모**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신청내용 항목

- 지원대상 업종

분류	상세 업종코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동차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110[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41[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13[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421[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73[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화력발전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입증자료 필요)	
철강	241[1차 철강 제조업]	242[비철금속 제조업]
석유화학	20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2[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업]
정유	192[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별지 제1-1호 서식]

산업·일자리전환 직무훈련·전직지원 참여 근로자 명단

[illegible]

■ [별지 제1-2호 서식]

산업·일자리전환 직무훈련·전직지원 계획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설립일		피보험자 수		
업종		주요생산품		
2. 사업장 소개·개요				
3. 탄소중립 전환 추진배경(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				
4. 탄소중립 전환계획 및 대응방향				
5.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훈련계획				
훈련과정명		훈련시간	H	
훈련목표				
훈련대상				
훈련내용	학습단원	주요내용	시간(분)	이론/실습
훈련시설·장비				
6. 기타				

■ [별지 제1-3호 서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동의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과반수 동의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명단 별도 제출 필요

본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당사의 직무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의합니다.

연번	성 명	서 명	연번	성 명	서 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별지 제1-4호 서식]

근로자대표 선임서 (예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를 기재하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기재

성 명 :

생년월일 :

직 위 :

연 락 처 :

년 월 일

당사의 직무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사협의를 관련하여 상기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 대표로 선임함에 동의합니다.

연번	성 명	서 명	연번	성 명	서 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 [별지 제1-5호 서식]

노 사 협 의 서 (예시)

1. 직무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노사협의 실시 사유 및 협의 방법

- 실시사유 :
- 협의방법 : 예)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변경 등

2. 직무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방법 및 대상

3. 이후 인력활용방안

예)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에 따른 업종전환 계획, 전직자 외 인력활용방안 등

4. 전직 지원 서비스 지원 종료 이후 전직 지원 방안

예) 전직 지원 사업(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지원 등) 알선, 창업 지원(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 등

년 월 일

사업주대표 :

(서명/인)

근로자대표 :

(서명/인)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훈련지원금)」

[] 참여 신청
[] 변경 신청 검토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피보험자 수	
소재지 주소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2. 사업 참여 신청 내역				
☐ 신청 내용	[] 직무훈련		[] 전직지원서비스	
☐ 신청 기간	(시작일) . . .		(종료일) . . .	
☐ 직무훈련·전직지원 방법	[] 위탁 명		[] 자체 명	
☐ 신청 인원	[] 훈련비 명		[] 사업주 훈련장려금 명	
☐ 신청 금액	[] 훈련비 원		[] 사업주 훈련장려금 원	
	총 액		원	
3. 신청 검토 내용				
☐ 산업·일자리전환 유형	[] 탄소중립 전환		[] 디지털 전환	
☐ 지원대상 유형	[] 탄소중립 전환 지원대상 업종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 3년내 사업재편 승인기업(산업부)		[] 3년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중기부)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 임금체불 명단 공표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 상습 체불 사업주	
	[] (전직지원서비스 지원신청)전직지원의무화 적용된 기업			
☐ 노사협약 내용(대규모)	(협약일자) . . .		(협약내용)	
☐ 직무훈련·전직지원 방법	[] 위탁 명		[] 자체 명	
☐ 신청 인원	[] 훈련비 명		[] 사업주 훈련장려금 명	
☐ 신청 금액	[] 훈련비 원		[] 사업주 훈련장려금 원	
	총 액		원	

* 해당 양식은 고용센터 담당자용임

	심사항목(내용)		심사지표	검토결과(✓)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미흡
□ 검토내용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 (30점)	훈련 목표 적정성 (10점)	■ 훈련목표가 적합하고 실제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는가	10□	8□	6□	4□	2□
		훈련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10점)	■ 훈련 내용과 방법이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며, 훈련대상자의 학습 성과를 관리하기에 충분한가	10□	8□	6□	4□	2□
		훈련요건 충족 (10점)	■ 다음의 훈련요건을 충족하였는가 - 최소 1개월 이상 또는 최소 20시간 이상 - (훈련 장려금) 1일 4시간 이상 집체훈련 - (자체훈련) 훈련시설이 적정한가	요건을 모두 충족 10□		어느 요건 하나라도 불충족 0□		
	지원계획 및 향후계획의 적정성 (30점)	계획 작성의 구체성 (10점)	■ 산업 전환 및 이에 따른 훈련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10□	8□	6□	4□	2□
		훈련 참여자 선발의 적정성 (10점)	■ 훈련대상자 선발 기준 및 절차, 선발 결과가 적합한가	10□	8□	6□	4□	2□
		훈련종료 후 직무고도화 계획 적합성 (10점)	■ 훈련 종료 후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변경 또는 구체적인 재배치 계획이 적합한가?	10□	8□	6□	4□	2□
	지원의 필요성 (20점)	산업·일자리전환 대상 적정성 (15점)	■ 기업의 저탄소·디지털 전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의 사업 계획이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자 직무 변경의 필요성이 명확한가	15□	12□	9□	6□	3□
		사업수행 의지 (5점)	■ 사업의 저탄소·디지털 전환 또는 직무심화 훈련 등과 관련하여 노사협의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5□	4□	3□	2□	1□
	심사일 전일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 직전 3개월간 고용조정 인원 합계비율 (10점)		■ 20% 미만 - 10점 ■ 20~50% - 9점 ■ 50% 이상 - 7점					
	재배치 대상자 중 재배치 훈련비율 (10점)		■ 80% 이상 - 10점 ■ 50~80% - 9점 ■ 50% 미만 - 7점					
	합 계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조사자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심사항목		훈련목표의 적정성					
심사문항	• 훈련목표가 적합하고 실제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는가?	배점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10	8	6	4	2
평정척도		◦ 매우적정: 훈련목표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에 명백하게 부합하며, 실제 현업 직무 수행 등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수준 ◦ 적정: 훈련목표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함이 어느정도 인정됨 ◦ 보통: 훈련목표가 탄소중립·디지털전환과 관련성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실무 적용을 위해 별도 보완이 필요 ◦ 미흡: 훈련목표가 탄소중립·디지털전환과 연계성이 낮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지나치게 이론에 치중되어 있음 ◦ 매우미흡: 훈련목표가 탄소중립·디지털전환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동떨어져 있고, 훈련 이수 후에도 해당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심사항목		훈련 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심사문항	• 훈련 내용과 방법이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며, 훈련 대상자의 학습 성과를 관리하기에 충분한가	배점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10	8	6	4	2
평정척도		◦ 매우적정: 최신 산업 트렌드가 반영된 커리큘럼이 체계적이고, 학습자의 수준별 맞춤형 교수법과 실시간 피드백 체계가 구축되어 성과 달성이 확실함 ◦ 적정: 훈련 내용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괄하며 이론·실습 간 조화가 적절하고 주기적 학습 성취도 평가 계획이 구체적임 ◦ 보통: 훈련 내용이 적절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학습 성과관리가 다소 부실함 ◦ 미흡: 훈련 내용이 난이도조절에 실패했거나 학습 성과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도구가 미비함 ◦ 매우미흡: 훈련 내용이 목표와 무관한 단순 이론에 치중되어 있고, 학습 성과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기준·도구가 부재함					
심사항목		계획 작성의 구체성					
심사문항	•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훈련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배점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10	8	6	4	2
평정척도		◦ 매우적정: 산업환경 변화분석이 논리적·객관적이며, 그에 따른 훈련 필요성 및 로드맵도 타당하며 구체적임 ◦ 적정: 산업전환의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훈련 필요성 및 로드맵 역시 타당함 ◦ 보통: 훈련 필요성은 공감되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고, 구체적인 추진 배경 설명이 일부 미진함 ◦ 미흡: 계획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훈련을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해당 사업만의 특수한 내용을 담아낸 세부 실행방안이 부족함 ◦ 매우미흡: 산업전환의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훈련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빈약해 실제 훈련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항목		훈련 참여자 선발의 적정성					
심사문항	• 훈련대상자 선발 기준 및 절차, 선발 결과가 적합한가	배점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10	8	6	4	2
평정척도		◦ 매우적정: 명확하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이 존재하며, 전환시급성이 높은 대상자를 적절히 설정함					

	◦ 적정: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가졌고 훈련을 통한 교육 효과가 기대되는 대상자를 적절히 선발함 ◦ 보통: 선발기준과 절차는 있으나 실질적인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되어 일부 보완이 필요함 ◦ 미흡: 선발기준이 모호해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크고 선발 결과의 신뢰성이 낮음 ◦ 매우미흡: 별도의 선발기준과 절차 없이 임의로 참여자를 확정하며 선발결과가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						
심사항목	훈련종료 후 직무고도화 계획 적합성						
심사문항	• 훈련 종료 후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변경 또는 구체적인 재배치 계획이 적합한가?	배점	매우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10	8	6	4	2
평정척도	◦ 매우적정: 훈련종료 후 역할·책임 변경 또는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계획이 확정되어 훈련 이후 즉각적인 현장 투입 및 성과창출이 확실할 것으로 기대됨 ◦ 적정: 인력재배치 계획이 직제개편이나 인사발령 계획과 연동되어 있고 훈련 대상별 변경될 직무와 활용 방안이 제시됨 ◦ 보통: 재배치 또는 직무 고도화 방향성은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부서나 시기가 유동적이며 인사상 연계성이 다소 부족함 ◦ 미흡: 책임변경·재배치계획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며, 훈련 내용이 현업 업무에 어떻게 녹아들지에 대한 비전이 부실 ◦ 매우미흡: 훈련 종료 이후에도 기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거나 재배치 계획이 전무해 훈련결과와 실무 활용 간의 괴리가 큼						
심사항목	산업·일자리전환 대상 적정성						
심사문항	• 기업의 저탄소·디지털 전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의 사업 계획이 있고, 이에 따른 근로자 직무 변경의 필요성이 명확한가	배점	매우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5	12	9	6	3
평정척도	◦ 매우적정: 저탄소·디지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설비 도입, 자동화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직무 소멸에 따른 신규 직무로의 전환 필요성이 데이터로 입증됨 ◦ 적정: 전환 관련 사업 계획이 확정적이며 기술변화에 따른 근로자 역할 변화 등이 필수적임이 논리적으로 설명됨 ◦ 보통: 산업전환 관련 투자가 진행중이나 직무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다소 일반적이며 훈련의 직접적 연계성이 보통 ◦ 미흡: 설비 도입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기술도입이 직무변화보다는 단순 생산성 향상에 치중 ◦ 매우미흡: 산업전환과 무관한 일반적 사업확장 계획이며 근로자의 직무변경이나 고용위기 대응과는 무관함						
심사항목	사업수행 의지						
심사문항	• 사업의 저탄소·디지털 전환 또는 직무심화 훈련 등과 관련 하여 노사협의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배점	매우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5	4	3	2	1
평정척도	◦ 매우적정: 노사 공동선언, 단체협약 체결 등 공식적 합의가 완료되었고, 전환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상생안이 마련됨 ◦ 적정: 정기 노사협의회 등으로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훈련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배려 사항이 명문화됨 ◦ 보통: 노사 간 협의를 진행중이거나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가 확인됨 ◦ 미흡: 경영진 위주의 일방적 사업추진 계획만 있고 근로자 측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직무전환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존재 ◦ 매우미흡: 노사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거나 협의를 전무하며, 사업수행의지가 보이지 않고 성과달성도 불투명함						

심사항목	노사협의 및 의지						
심사문항	- 노사파트너십에 의한 직무재설계-교육훈련 연계 구조를 갖추었는가? - 산업전환 관련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지와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가?	배점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9-10	7-8	5-6	3-4	0-2
평정척도	- 매우적정: 상설 협의체가 정례 운영되고 회의증빙·합의서·로드맵이 공유되어 이행점검이 체계화되어 있다. - 적정: 협의체가 실존·정례화되어 있으며 회의요약·합의문을 구비하고 추진 확산 계획이 구체적이다. - 보통: 프로젝트형 협의라도 핵심결정 요약과 시각적인 로드맵(도표 등)으로 제시하여 추진 근거가 확인된다. - 미흡: 협의 흔적은 있으나 실행근거와 현장 소통이 부족해 실효성 확인이 어렵다. - 매우미흡: 형식적 동의 또는 사후 통보 수준으로, 이행체계와 합의 근거가 부재하다.						
심사항목	직무재설계-교육훈련 연계 적절성 (프로그램 기획)						
심사문항	산업전환 필요성을 반영하여 직무심화/전환/이전직 지원 프로그램이 타당하게 설계·개발되었는가? (직무재설계 결과물과 지원내용이 1:1로 연결되는가)	배점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30	27-30	21-26	15-20	9-14	0-8
평정척도	- 매우적정: 직무재설계 결과와 교육과정이 1:1로 매칭되고, 현황(역량격차 등)-학습목표-평가배치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며, KPI와 데이터 근거가 충분하다. - 적정: 교육과정이 재설계와 대체로 부합하고, 평가·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일부 약점에 대한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 보통: 전반적 방향성은 일치하나 표준화가 부족하고, 평가·배치 연계가 부분적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 미흡: 훈련목록 제시에 치중되어 재설계와의 연결 근거가 약하며, 평가·배치 계획이 선언적 수준에 머문다. - 매우미흡: 일반적 직무교육 수준에 그쳐 전환·재설계와의 관련성이 불명확하다.						
심사문항	직무재설계를 고려하여 직무심화/전환/이전직지원 프로그램 방법 설계는 타당한가? (자재/위탁, 집합 등)	배점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20-18	17-13	13-9	8-4	0-3
평정척도	- 매우적정: 직무 특성에 맞춰 오프라인, 현장코칭, 과제학습이 최적 조합으로 설계되고, 일정·난이도·평가방법의 정합성이 매우 높다. - 적정: 교육방법의 선택 근거가 타당하고 운영계획이 분명하며, 세부 운영상 보완사항이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 보통: 표준적 방법을 적용하여 기본 적합성은 확보하였으나, 직무별 맞춤형이 평이하다. - 미흡: 방법 선택의 근거가 부족하고 일정·평가 설계가 험거워 교육 품질의 변동 가능성이 크다. - 매우미흡: 단일 방식에 치우쳐 직무 적합성이 낮고 학습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심사항목	이행·촉진 등 운영관리 적절성 (활성화)						
심사문항	(공통) 직무심화/전환/이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원 참여 안내/독려/촉진 등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배점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20-18	17-13	13-9	8-4	0-3
평정척도	- 매우적정: 선발-오리엔테이션-멘토링-현장 코칭-피드백의 전 주기 체계가 작동하며, 참여율·이탈률 등 운영 지표가 상시 관리되도록 제시되어 있다. - 적정: 핵심 촉진장치(멘토링·피드백 등)가 마련되고, 참여 데이터 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보통: 공지·출결 등 기본 운영은 가능하나, 참여 촉진·지원 장치는 보통 수준이다. - 미흡: 운영체계가 부분적으로만 갖춰져 참여 독려와 학습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 매우미흡: 운영·참여 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교육 이행의 안정성이 낮다.						

심사항목	지원결과 활용계획 적절성 (개인성과)						
심사문항	지원결과 활용계획이(배치/임금/경력개발 등) 제시되어 있는가?	배점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9-10	7-8	5-6	3-4	0-2
평정척도	- 매우적정: 수료 후 배치/직무등급/임금·스킬수당/경력개발계획(CDP) 반영의 기준·대상·시점이 명확하며, 관련 규정·예산과 연계되어 있다. - 적정: 반영 항목과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일부는 규정·예산과 연계되어 있다. - 보통: 반영 의사와 큰 틀은 제시되나, 기준·대상·시점이 부분적으로만 구체화되어 있다. - 미흡: 반영 계획이 선언적이며 기준과 실행 절차가 불명확하다. - 매우미흡: 수료 결과의 보상·배치 연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심사항목	목표달성 가능성 (조직성과)						
심사문항	지원결과 활용계획을 토대로 기업의 산업전환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배점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9-10	7-8	5-6	3-4	0-2
평정척도	- 매우적정: 핵심 KPI 3개 내외를 수치화하고 측정주기·데이터 소스·보완책이 구체적이다. - 적정: KPI 2개 이상을 수치화하고 측정주기와 데이터 소스를 명시하여 관리 가능성이 높다. - 보통: KPI 1개라도 수치화하고 주기 또는 데이터 소스를 제시하였다. - 미흡: 정성표현 위주로 측정설계가 불명확하거나 기준선·목표가 모호하다. - 매우미흡: 지표 체계가 부재하여 성과관리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심사항목	예산 타당성 (적합 or 조건부 조정)						
심사문항	-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되었는가? - 기업 규모·대상 특성에 따른 훈련비용 산출 타당성 - 합리적이면 100% 인정,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적합 부여	배점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적합, 조건부	전액 인정	10%~20% 감액	20%~40% 감액	40% 이상 감액	전면 재편성
평정척도	- 매우적정: 단가·시간·인원 산식이 명료하고 비교견적·상계 규칙을 충족하며 증빙이 완비되어 전액 지급이 타당하다. - 적정: 전반적으로 타당하나 일부 과다 또는 증빙 보완이 필요하여 감액 조건부 지급이 적정하다. - 보통: 산식 근거가 일부 미흡하여 일정 비율 감액 조건부 지급이 타당하다. - 미흡: 과다 계상 또는 증빙 취약 구간이 다수 존재하여 대폭 감액 조건부 지급이 필요하다. - 매우미흡: 산식·증빙 결여, 중복수혜 위험 또는 허위 기재 등으로 지급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훈련지원금) 사업 참여

[] 승인
[] 일부승인
[] 불승인
[] 변경승인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피보험자 수	
소재지 주소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2. 승인내용			
☐ 산업·일자리전환 유형	[] 탄소중립 전환 [] 디지털 전환		
☐ 지원대상 유형	[] 탄소중립 전환 지원대상 업종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 3년내 사업재편 승인기업(산업부) [] 3년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중기부)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승인 내용	[] 직무훈련 [] 전직지원서비스		
☐ 승인 기간	(시작일) . . .		(종료일) . . .
☐ 직무훈련·전직지원 방법	[] 위탁 명 [] 자체 명		
☐ 승인 인원	[] 훈련비 명 [] 사업주 훈련장려금 명		
☐ 승인 금액	[] 훈련비 원 [] 사업주 훈련장려금 원		
	총 액 원		
3. 불승인(일부승인) 사유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일부승인 []불승인 []변경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사업 참여 관련 유의사항 붙임 참조

〈유의사항 안내〉

- 가.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참여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참여 근로자 변경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변경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 라.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사업주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고용 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마.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바. 사업주는 승인 받은 계획서 상 **훈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 40시간 이상 훈련(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0시간 이상) 진행한 경우, 훈련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소요 비용(실비)을 지원하고, 사업주 훈련장려금은 1일 4시간 이상 집체 훈련 시 1인당 정액 10만원(월 200만원 한도, 최대 600만원)을 지원(단, 지원 인원 한도는 최대 100명)합니다.
- * '26년 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27년 예산 미반영 시 연도 중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아.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조사의 실시 등)에 따라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훈련지원금)」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피보험자 수	
소재지 주소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2. 신청 내용				
□ 산업·일자리전환 유형	[] 탄소중립 전환		[] 디지털 전환	
□ 지원대상 유형	[] 탄소중립 전환 지원대상 업종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 3년내 사업재편 승인기업(산업부)		[] 3년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중기부)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신청 내용	[] 직무훈련		[] 전직지원서비스	
□ 신청 기간	(시작일) . . .		(종료일) . . .	
□ 직무훈련·전직지원 방법	[] 위탁	명	[] 자체	명
□ 신청 인원	[] 훈련비	명	[] 사업주 훈련장려금	명
□ 신청 금액	[] 훈련비	원	[] 사업주 훈련장려금	원
	총 액		원	
□ 계좌 정보	은행		(예금주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출석부, 훈련수료증 등 훈련 실시 증빙서류 1부 2. 이체증 등 비용 지급 서류 1부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 .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훈련과정명		수행방법	[]위탁 []자체
훈련기관명		훈련비용	원
훈련장소		훈련인원	명
훈련기간	(훈련시작일) . . .	(훈련종료일) . . .	
	(훈련시간) 시간	(집체일수) 일	

훈련과정명		수행방법	[]위탁 []자체
훈련기관명		훈련비용	원
훈련장소		훈련인원	명
훈련기간	(훈련시작일) . . .	(훈련종료일) . . .	
	(훈련시간) 시간	(집체일수) 일	

훈련과정명		수행방법	[]위탁 []자체
훈련기관명		훈련비용	원
훈련장소		훈련인원	명
훈련기간	(훈련시작일) . . .	(훈련종료일) . . .	
	(훈련시간) 시간	(집체일수) 일	

[illegible]

■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훈련지원금)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피보험자 수	
소재지 주소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2. 지급결정 내용			
☐ 산업·일자리전환 유형	[] 탄소중립 전환 [] 디지털 전환		
☐ 지원대상 유형	[] 탄소중립 전환 지원대상 업종		[]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참여기업
	[] 3년내 사업재편 승인기업(산업부)		[] 3년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중기부)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지급 내용	[] 직무훈련 [] 전직지원서비스		
☐ 지급 결정 기간	(시작일) . . .		(종료일) . . .
☐ 직무훈련·전직지원 방법	[] 위탁 명	[] 자체 명	
☐ 지급 결정 인원	[] 훈련비 명	[] 사업주 훈련장려금 명	
☐ 지급 결정 금액	[] 훈련비 원	[] 사업주 훈련장려금 원	
	총 액 원		
2.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